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10

발의연월일: 2021. 1. 25.

발 의 자: 김예지 · 이종성 · 김선교

추경호 • 이명수 • 김희국

윤재옥 • 전주혜 • 황보승희

박 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동물의 적정한 사육·관리 및 영업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, 매년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 기준,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이고 비인도적인 동물생산 및 동물판매업체들이 끊이지 않아 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·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·관리된 동물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실태가 우수한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생산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운영실태 개선에 힘쓰고 이에 따라 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3(우수 동물판매업자 등 인증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·관리된 동물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운영실대가 우수한 동물판매업자 또는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,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 기준·절차, 우수업체의 표시,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

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8조의3(우수 동물판매업자 등
	인증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
	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·
	관리된 동물의 판매를 장려하
	기 위하여 운영실태가 우수한
	동물판매업자 또는 제32조제1
	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
	하는 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
	<u>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
	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
	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
	<u>다.</u>
	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
	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
	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	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
	취소하여야 하고, 제5항에 따른
	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
	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
	<u>다.</u>
	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

된 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 표자를 포함한다)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.

⑤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 기준·절차, 우수업체의 표 시,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.